

우리 전통의약학 자료의 보호 방안

-WIPO의 전통지식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의 대응 방안 모색-

이재현* · 김용진** · 최환수***

The protective ways of informations o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 Finding ways against discuss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n traditional knowledge by WIPO -

Lee, Je-Hyun* · Kim, Yong-Jin** · Choi, Hwan-Soo***

* Department of Oriental Pharmaceutical Science, College of Pharmacy,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Department of Korean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eajon University, Deajon, Korea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WIPO international government committee will finish to develop toolkit for making documentation on discuss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with TK, GR until the late 2003. As they construct DB of TK, GR, it becomes in a hurry to construct DB of TK information in Korea.

We looked into application of copyright in force and a lot of problems in terms of analyzing medical books in the resent condition or protecting them in Korea.

There are 29 kinds which have been lost, 12 kinds which could have read in parts, 136 kinds which have been existed of Korean medical books before 1900. There are also a lot of medical books which have been published after 1900 and still are unpublished.

It would be 406 medical books from China totally, 111 kinds from Chosun Dynasty version, 134 kinds from Euybangeuchui, 225 kinds from Hyangyackjibsungbang, 78 kinds from Dongeuybogam.

We consider to know whether Korean medical books could be applied to the copyright in force or not in accordance with discussions of WIPO on the period, subject(author), contents of protection. If it is applied to the copyright in force, it will be decided to revise according to discussions of WIPO.

On the other hand, the problem which is occurred to protect Korean medical books is friction with China as importing their medical books, to find our medical books actively which has been unpublished.

*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Finally, We have to revise administr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standards or protect our medical books by making new administration laws.

Keyword : WIPO, traditional knowledge, gene resource, 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

I. 서 론

WIPO 정부간위원회에서 전통지식(이하 'TK'¹⁾라고 함), 유전자원(이하 GR이라 함) 등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이라고 간략히 칭함)적 보호에 관한 논의가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TK, GR의 목록화 및 DB 구축에 관한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보면 문현화 지원을 위한 Toolkit 개발을 2003년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DB 구축에 대하여 '내용 및 출처확인 표준', '기술적 표준' 및 '보안관련 표준' 등의 기술적인 제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 등의 판단에 있어 DB화된 자료를 위주로 선행기술로 인정 보호하기 위한 작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에따라 국내 TK 관련 자료에 관한 DB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내 전통의약 관련 자료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방대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정리와 발굴이 미흡한 현실에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쉽지않다. 특히 현재 WIPO의 논의에서 제시되거나 기존 국제 지재권상 등의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자료만을 보호한다면 많은 중요한 우리 전통의약 관련 자료가 보호받지 못할지 모른다. 게다가 전통의약분야의 지재권 보호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은 전통의학을 선행기술로서의 전통지식의 분류 및 색인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옴으로써 대표적인 TCM(China Traditional Chinese Medicinal) Patent DB가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는 현재 전통의약 관련 Patent DB 는 거의 없다.

이에 우리 의서를 선행기술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DB화 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문제

로서 우리가 보유한 자료 특히 우리 의서에 대한 현황과 우리 의서에 인용이 많이 된 중국 의서의 수입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 의서에 관한 기존 지재권 보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우리 의서의 현황 및 중국의서 수입과정

1) 우리 옛 의서 현황

우리 옛 의서에 관한 연구 서적²⁾을 참고로 근대 까지 알려진 우리 의서를 정리하였다.

(1) 실전(失傳) 의서

경험방금활인신방(經驗方及活人新方, 1519), 고려 노사방(高麗老師方), 달학이해방(痘瘡易解方), 박상돈진역방(朴尙敦疹疫方, 1786), 백제신집방(百濟新集方), 산서(產書), 삼방(三方), 식료찬요(食療纂要, 1487), 신라법사방(新羅法師方), 신라법사비밀방(新羅法師秘密方), 신라법사유관비밀요술방(新羅法師流觀秘密要術方), 악병치료방(惡病治療方, 1472~1473), 언해벽온방(諺解辟瘟方, 1518), 언해산서(諺解產書), 언해창진방(諺解瘡疹方, 1518), 영운제방(纓雲齊方), 위생방(衛生方), 의림촬요(醫林撮要, 鄭敬先撰), 의문정요(醫門精要, 1494), 의방요록(醫方要錄, 1493), 의학변증지남(醫學辨證指南, 1600), 임신진역방(壬申疹疫方, 1752), 정북창방(鄭北窓方), 진맥도결(診脈圖訣), 치포방(治庖方), 치포이험(治庖易驗), 하중추방(河中樞方), 황달학방(黃疸癆方), 황달학질치료방(黃疸癆疾治療方)

2) 崔秀漢 編著. 朝鮮醫籍通考. 1版1刷,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金信根 編著. 韓醫藥書叢, 초판 3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1卷), 서울: 麟江出版社, 1994.

1) 본고에서는 TK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전통의약 지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사용하였다.

(2) 일부 내용을 알 수 있는 의서

동인경험방(東人經驗方), 본조경험방(本朝經驗方), 비예백요방(備豫百要方), 삼화자향약방(三和子鄉藥方), 약방(藥方)(혹 의방(醫方)), 어의촬요방(御醫撮要方, 1226년 간행), 의약론(醫藥論, 잔존(殘存), 1463), 제증입효방(濟衆立效方), 향약간이방(鄉藥簡易方), 향약고방(鄉藥古方), 향약제생집성방(鄉藥濟生集成方, 1398), 향약혜민경험방(鄉藥惠民經驗方)

(3) 실존 의서

(황씨)약성가((黃氏)藥性歌, 1868), 가정구급방(家庭救急方, 1909), 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 1525년 간행), 검요(檢要), 경락학총론(經絡學總論), 경험두방(經驗痘方), 경험방(經驗方), 경험방회편(經驗方匯編), 고금활유기서(古今活幼奇書, 제영신편과 거의 동일), 고사촬요(攷事撮要, 1554), 고사신서(攷事新書, 1554), 광체비급(廣濟秘笈, 1790년 간행), 구급방(救急方, 1419~1450), 구급양방(救急良方, 1559), 치종비방 말부(末附), 구급이해방(救急易解方, 1498), 급유방(及幼方, 1749), 단곡경험방초(丹谷經驗方抄), 단방신편(單方新編, 1908), 단방필요경험신편(單方必要 經驗新編, 1913년 간행), 도장집요초(道藏輯要抄), 동의보감(東醫寶鑑, 1610), 동의사상신편(東醫四象新編),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1894), 동은잡저(東隱雜著,抄本), 두창경험방(痘瘡經驗方, 1636년 간행), 둔몽집(鈍蒙集, 1861), 마경초집(馬經抄集),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 마경언해), 마과회통(麻科會通, 1798), 마방통회(麻方統匯, 1802년 간행), 마진기방(麻疹奇方, 1775), 마진편(麻疹篇, 1786), 마진회성(麻疹匯成, 1798), 만병신록(萬病新錄, 필사본), 목과일람(目科一覽), 박시양방(博施良方), 방약합편(方藥合編, 1884 개편), 백광현지사공유사(白光弦知事公遺事), 벽역신방(辟疫新方, 1613), 벽온신방(辟瘟新方, 1653), 보유신편(保幼新編, 1905), 본초정화(本草精華), 부녀필지(婦女必知, 일본인이 소장), (본초)부방편람(附方便覽, 1855), 분문온역이해방(分門瘟疫易解方, 1542),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 1644), (증보)산림경제(山林經濟, 1715), 산방수록(產方隨錄), 성두신방(聖痘新方, 필사본), (경험秘方)소아보감(小兒保鑑,

1936), 소아의방(小兒醫方, 1898), 수민묘전(壽民妙詮, 1799), 수생신감(壽生新鑑, 1865?), 수양총서유집(壽養叢書類集, 1620, 사장(私藏)), 수진경험신방(袖珍經驗新方, 1912), 시종통편(時腫通編, 1817년 간행), 신기체험(身氣踐驗), 신선태을자금단방(神仙太乙紫金丹方, 1497),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 신찬간이방언해(新撰簡易方諺解, 1489), 신찬구급간이방(新撰救急簡易方), 신찬벽온방(新纂辟瘟方, 1613), 신편집성우마의방(新編集成牛馬醫方, 1399), 약방첨록(藥房臘錄), 약산호고(종방)촬요(若山好古(腫方)撮要, 일본인소장), 양방금단(良方金丹), 양의미(瘍醫微, 1815),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 1607년 간행),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 1601), 언해석약증치방(諺解疎藥症治方),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產集要, 1601), 용산아우두편(龍山療痘編, 1847), 우두신설(牛痘新說, 1885), 우마양저염병치료방(牛馬羊豬染病治療方, 1541), 유유일심(幼幼一心, 1781), 의가비결(醫家秘訣, 1914), 의가신방(醫家神方, 1836?), 의감산정요결(醫鑒刪定要訣, 1849), 의감증마(醫鑒重磨, 1906년 간행), 의감집요(醫鑑集要), 의과선생안(醫科先生案), 의과팔세보(醫科八世譜), 의령(醫零, 1798), 의림비서(醫林秘書, 1867, 필사본), 의림촬요(醫林撮要, 1674년 간행, 楊禮壽撰), 의문보감(醫門寶鑑, 1724), 의방신감(醫方新鑑, 1915년 간행), 의방유취(醫方類聚, 1445), 의방촬요(醫方撮要, 1906), 의방활투(醫方活套, 1869), 의보(醫寶, 필사본), 의본(醫本, 필사본), 의약감(醫藥鑒, 1856), 의종손익(醫宗損益, 1868), 의학침선(醫學鍼線, 1853), 의회(醫集, 1871?, 필사본), 옹골방(鷹鵠方), 이생록(顧生錄, 1523), 이양편(二養編, 1618), 인부수지(人父須知, 필사본), 인서문견록(麟西聞見錄, 사장(私藏)), 인체지(仁濟志), 임신촬요방(妊娠撮要方, 1503년 간행), 정정동의보감탕액편(訂正東醫寶鑑湯液篇), 제녕신편(濟嬰新編, 1889), 제름편(濟癰篇, 필사본), 제명진편(濟命真篇, 1898), 제영신론(濟嬰新論, 1902), 제중신편(濟衆新編, 1799), 종두신서(種痘新書, 1898, 일본인 작성), 주촌신방(舟村新方, 1687), 중등생리위생학(中等生理衛生學, 1907,譯書),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訣集成, 중국의서교정본), 찰병용약결(察病用藥訣, 필사본), 창진집(瘡疹集,

1457년 산정(刪定)), 초당유결(草堂遺訣), 초창결(草窓訣, 1725),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 1538년 간행), 춘감록(春鑒錄, 1927년 간행), 치종비방(治腫秘方, 1559년 간행), 치종지남(治腫指南,抄本),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1644년 간행), 침구요결(鍼灸要訣, 1600), 침구택일편집(鍼灸擇日編集, 1447년 간행), 태교신기(胎敎新記, 1821), 태산요록(胎產要錄, 1434년 간행), 통현집(通玄集), 팔진방(八陣方), 해혹변의(解惑辨疑, 1840), 항약구급방(鄉藥救急方, 1236~1251년 간행), 항약집성방(鄉藥集成方, 1433), 향약채취월령(鄉藥採取月令, 1431), 호렬자병예방주의서(虎列刺病豫防注意書, 1902), 홍진신방(紅疹新方, 1802년 간행), 황제내경소문대요(黃帝內經素問大要), 황제소문절요(黃帝素問節要, 1904)

우리 의서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이 없어진 의서는 29종, 일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12종, 현재 있는 의서는 136종이다. 이 외에 아직 일반에게 미공개된 회귀본, 발간하지 못한 원고본, 당시 명의들의 임상기록, 비방 등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하당기증문고³⁾의 의서들과 같다. 특히 아직도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자들에게 조차 빨굴되지 않은 옛 의서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미공개된 의서

경험단방, 만병지남, 홍진경험방, 산부경험방, 삼의일험방(三意驗方), 운기경험방, 호은경험방(湖隱經驗方), 광제보감, 금낭경험방, 잡병요람, 잡병요초, 임상처방기, 견문실험방(見聞實驗方), 구급단방(救急單方), 구급신방, 구급이방(救急易方), 구급

3) 도서정보 2003. 한국한의학연구원. 2003: 117-119.

하당기증문고에는 400여부 고한의서가 있다. 조선고활자본 10책, 목판본 의서 33책, 중국판 의서 47책, 납활자·석판·프린터본 28책, 필사본중 경험방서류 32책, 구급방류 6책, 구황방(救荒方)류 8책, 단방(單方)/간이방(簡易方)류 25책, 조선의서 초사본류 26책, 중국의서 초사본류 67책, 수의(獸醫)서류 5책, 가정의학서류 12책, 약성가류 23책, 한글의서(언해의서(諺解醫書))류 9책, 장부본 7책, 침구서류 27책, 기타 의서 35책, 의학관련서 5책 등이 있다.

방초, 구황방, 구황지남, 구황촬요, 구황촬방, 단방 경험만병신효, 언문단방, 단방비결(單方秘訣), 단방 신편(單方新編), 단방치방, 단방약(신험방), 단방집, 단방처방, 단방처방예, 견문방약(見聞方藥), 의문단방(醫門單方), 간이단방, 간이양방, 경효방, 경험신방(經驗新方), 묘방(妙方), 보제신방(普濟新方), 신묘방(神妙方), 신효약방문, 의약신방, 제병신효(諸病神效), 제종신방(諸種新方), 청요신방(淸要新方), 치병신방(治病新方) 등

(5) 근대이후 출판된 의서

동의임상 새처방집, 청강의감, 한방임상40년 등 이외 1900년대 이후 출간된 의서가 있다. 이러한 의서들은 저작자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거나 혹은 기존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중국의서의 수입

중국의서의 수입에 대한 기록으로 고구려 평원왕 3년(561)에 중국 끗나라 지총(知聰)이 내외전(內外典), 악서(樂書), 명당도(明堂圖) 등 164권을 가지고 고구려를 거쳐 일본에 귀화하였다는 일본서기의 기록을 볼 수 있다⁴⁾. 그러나 본고에서는 간략하게 한국에서 인쇄한 중국의서와 우리 의서에서 인용된 중국의서의 현황을 통해 중국의서의 수입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조선판 중국의서 현황은 조선의적통고⁵⁾를 근거로 삼았고, 우리 의서의 편찬에 인용된 중국의서의 현황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3대의서라고 하는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만⁶⁾ 우선 살펴보았다. 이중 우리 의서를 인용한 경우는 제외하였고, 인용된 중국의서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대표적인 의서명만을 기재하였다.

* 조선판 중국의서 (1), 의방유취 (2), 향약집성방 (3), 동의보감 (4)

4) 金斗鍾. 韓國醫學史, 재판, 서울: 探求堂, 1978: 29-30.

5) 崔秀漢 編著. 위의 책, 1996.

6) 金信根 編著. 위의 책; 김남일. 鄉藥集成方의 인용문 헌에 대한 연구. 제26회 한국고전연구 심호지음, 鄉藥集成方의 종합적 검토. 震檀學會, 1998: 60-78.; 최환수, 신순식. 醫方類聚의 引用書에 관한 연구(1).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997: 3(1): 17-40.

(소홍교정)경사증류비급본초((紹興校定)經史證類備急本草)(1), (4) (증보)만병회춘((增補)萬病回春)(1), 가감십삼방(加減十三方)(1), 각기치법총요(脚氣治法總要)(3), 간기방(簡奇方)(2)(3), 간요제증방(簡要濟衆方)(2)(3), 간이방(簡易方)(1)(2)(3), 갈씨방(葛氏方)(3), 갈치천(葛稚川)(3), 갑을경(甲乙經)(4), 거가필용(居家必用)(2)(3), 곽계중(郭稽中)(3), 건곤생의(乾坤生意)(1), 건곤생의비온(乾坤生意秘蘊)(1), 격치여론(格致餘論)(1), 경사증류대관본초(經史證類大觀本草)(1), 경험방(經驗方)(3), 경험비방(經驗秘方)(2)(3), 경험양방(經驗良方)(2)(3)(4), 경험해상방(經驗海上方)(3), 경험후집(經驗後集)(3), 경험후방(經驗後方)(3), 경험제세양방(經驗濟世良方)(1), 고금녹협방(古今錄驗方)(3)(4), 고금의감(古今醫鑑)(4), 관견대전양방(管見大全良方)(2), 광리방(廣利方)(3), 광제방(廣濟方)(1)(3), 구급방(救急方)(3), 구급이방(救急易方)(1), 구선활인심(驪仙活人心)(2), 국방발휘(局方發揮)(1), 군중의약(軍中醫藥)(1), 귀유방(鬼遺方)(3), 근선서(勤善書)(2), 근효방(近效方)(3), 금궤구현(金匱鉤玄)(2)(3), 금궤방(金匱方)(2)(3)(4), 금궤옥함(金匱玉函)(3)(4), 금단대성(金丹大成)(2), 급구선방(急救仙方)(2), 기효양방(奇效良方)(1), 난실비장(蘭室秘藏)(1)(2), 남북경험방(南北經驗方)(2), 남북사(南北史)(3), 남양활인서(南陽活人書)(2)(3)(4), 내외상변혹론(內外傷辨惑論)(1)(2), 내조도(內照圖)(4), 단계선생의서찬요(丹溪先生醫書纂要)(1), 단계심법(丹溪心法)(4), 단계심법부여(丹溪心法附餘)(4), 단병제강(斷病提綱)(2), 담료방(澹寮方)(2)(3), 담료집협비방(澹寮集驗秘方)(3), 담씨(譚氏)(3), 담씨방(譚氏方)(3), 담씨소아방(譚氏小兒方)(3), 담헌방(澹軒方)(2), 당본주(唐本註)(3), 당위주독행방(唐韋宙獨行方)(3), 대전본초(大全本草)(2), 도경(圖經)(3), 도경본초(圖經本草)(3), 도서팔제성화경(道書八帝聖化經)(3), 도은거(陶隱居)(3), 도인방(導引方)(3), 동원시효방(東垣試效方)(2)(3), 동원십서(東垣十書)(1)(4), 동원진주낭(東垣珍珠囊)(1), 동원처방용약지장진주낭(東垣處方用藥指掌珍珠囊)(1)(3), 동인침구도(銅人鍼灸圖)(1), 두과류편석의(痘科類編釋意)(1), 두문방(斗門方)(3), 두임방(杜壬方)(3), 두진방(痘疹方)(2), 두진정론(痘疹定論)(1), 두진회통(痘疹回通)(1), 만병회춘(萬病回春)(1)(4), 매사방(梅事方)(3), 맥결(脈訣)(1)(4), 맥결이현비요(脈訣理玄秘要)(1), 맥

경(脈經)(1)(4), 맥어(脈語)(1), 맹선(孟詵)(3), 명당경(明堂經)(3)(4), 명의잡저(名醫雜著)(1)(4), 무구자활인서(無求子活人書)(2), 문로공(文潞公)(3), 문험방(聞驗方)(3), 물청자속해팔십일난경(勿聽子俗解八十一難經)(1), 묘정객화(茆亭客話)(3), 발수방(拔粹方)(2)(3), 백병구현(百病鉤玄)(4), 백요방(百要方)(3), 백일선방(百一選方)(3), 범왕방(范王方)(3)(4), 별설(別說)(3), 병부수집(兵部手集)(3), 보구방(普救方)(3), 보단요결(寶丹要訣)(2), 보동비요(保童秘要)(1)(2)(3), 보명집류요(保命集類要)(2), 보주동인경(補注銅人經)(1)(3), 복기정의(服氣精義)(3), 복수론(福壽論)(2), 본사방(本事方)(3)(4), 본초(本草)(3)(4), 본초괄요(本草括要)(1), 본초발휘(本草發揮)(1), 본초보유(本草補遺)(4), 본초습유(本草拾遺)(4), 본초연의(本草衍義)(1)(3), 본초연의비급방(本草衍義備急方)(3), 본초음의(本草音義)(4), 본초집요(本草集要)(4), 본초집방(本草集方)(3), 부인대전(婦人大全)(3), 부인대전양방(婦人大全良方)(1)(2)(3)(4), 북몽쇄언(北夢錄言)(3), 비급방(備急方)(3), 비위론(脾胃論)(1)(2)(3), 비전외과(秘傳外科)(2), 비전외과방(秘傳外科方)(2), 사기(史記)(3), 사림광기(事林廣記)(2)(3), 사문유취(事門類聚)(3), 사시찬요(四時纂要)(2), 산거사요(山居四要)(1)(2)(3), 산경(產經)(3), 산과보경집(產科保慶集)(3), 산보(產寶)(2)(3), 삼법육문(三法六門)(2), 산육보경집(產育保慶集)(3), 삼원참찬연수서(三元參贊延壽書)(1)(2)(3), 삼인방(三因方)(2)(3)(4), 삼화자방(三和子方)(3), 상한론(傷寒論)(1)(3)(4), 상한론주해(傷寒論注解)(2), 상한류서(傷寒類書)(2)(3), 상한류요(傷寒類要)(1)(3), 상한류절(傷寒類節)(1), 상한명리론(傷寒明理論)(2)(3)(4), 상한발미론(傷寒發微論)(2), 상한백문가(傷寒百問歌)(2), 상한백증가(傷寒百證歌)(2), 상한부(傷寒賦)(1), 상한쇄언(傷寒瑣言)(4), 상한심요론(傷寒心要論)(2), 상한심요여론(傷寒心要餘論)(2), 상한의감(傷寒醫鑑)(2), 상한지미론(傷寒指迷論)(4), 상한직격(『傷寒直格』)(2), 상한활인서(傷寒活人書)(2), 상한활인서괄(傷寒活人書括)(2), 상한활인지장도(傷寒活人指掌圖)(1)(2)(3), 쇄상방(塞上方)(3), 서씨태산방(徐氏胎產方)(2), 서씨효험방(徐氏效驗方)(3), 서죽당방(瑞竹堂方)(2)(3), 선명론(宣明論)(2)(3)(4), 선전제음방(仙傳濟陰方)(2), 성옹활유구의(省翁活幼口議)(2)(3), 성제총록(聖濟總錄)(1)(2)(3)(4), 성효방(聖效方)(3), 세원

록(洗冤錄)(3), 세의득효방(世醫得效方)(1)(2)(3)(4), 소문입식운기논오(素問入式運氣論奧)(1), 소아궁기방(小兒宮氣方)(3), (소아)소씨병원((小兒)巢氏病源)(1)(2)(3)(4), 소아약증(小兒藥證)(1)(2)(3), 소품방(小品方)(3), 소학사(蘇學士)(3), 속십전방(續十全方)(3), 속의설(續醫說)(1)(4), 손상구급(孫尚救急)(3), 손상약방(孫尚藥方)(3), 손용화(孫用和)(3), 손조방(孫兆方)(3), 손학사(蘇學士)(3), 속십전방(續十全方)(3), 속의설(續醫說)(1)(4), 손상구급(孫尚救急)(3), 손진인식시(孫眞人食忌)(3), 손진인침중기(孫眞人枕中記)(3), 쇄쇄록(瑣碎錄)(2)(3), 수역신방(『壽域神方』)(2), 수월노반경(修月魯般經)(2)(3), 수월노반경후록(修月魯般經後錄)(2), 수진방(袖珍方)(1)(2)(3), 수진비결(修眞秘訣)(2), 수진비지(修眞秘旨)(3), 수진신선방(修眞神仙方)(3), 수친양노서(壽親養老書)(1)(2), 수친양노신서(壽親養老新書)(1), 승금방(勝金方)(3), 승한방(乘閒方)(3), 시원단효방(施圓端效方)(2), 시재의방(是齋醫方)(2), 식물본초(食物本草)(1), 식료(食療)(3), 식료본초(食療本草)(4), 식의심경(食醫心鏡)(3), 식의심감(食醫心鑒)(2)(3), 식품집(食品集)(1), 신간주석소문현기원병식(新刊注釋素問玄機原病式)(1)(4), 신간통진자보주왕숙화맥결(新刊通真子補注王叔和脈訣)(1), 신간혜민어약원방(新刊惠民御藥院方)(1), 신교만전방(神巧萬全方)(2), 신농본초도(神農本草圖)(1), 신은(神懸)(2), 신옹경(神應經)(1)(4), 신주동인경(新鑄銅人經)(3), 신효만전(神效萬全)(3), 신효명방(神效名方)(2)(3), 신효방(神效方)(3), 신효방(新效方)(2)(3), 심존중(沈存中)(3), 심존중필담(沈存中筆談)(3), 십사경발휘(十四經發揮)(1), 십약신서(十藥神書)(1), 십전박구방(十全博救方)(3), 십전방(十全方)(3), 십형삼요(十形三寮)(2), 약대(藥對)(4), 약성가(藥性歌)(1), 약성론(藥性論)(3), 약성포구(藥性炮炙)(4), 양노봉친서(養老奉親書)(3), 양생대요(養生大要)(1), 양생주론(養生主論)(4), 양생필요방(養生必用方)(3), 양씨가장방(楊氏家藏方)(3), 양씨방(楊氏方)(3), 양씨산유(楊氏產乳)(3), 양제방(良濟方)(3), 양제비급(良濟備急)(3), 양제비급방(良濟備急方)(3), 어약원방(御藥院方)(1)(2)(3), 엄씨제생방(嚴氏濟生方)(3), 엄씨제생속방(嚴氏濟生續方)(2), 연년방(延年方)(3), 연의(衍義)(3), 연하성효방(烟霞聖效方)(2)(3), 영류검방(永類鈐方)(1)(2)(3)(4), 영원방(靈苑方)(3), 영추경(靈樞經)(1)(4), 오씨집험방(吳氏集驗方)(2), 오장도(五臟圖)(1)(2)(3),

옥기미의(玉機微義)(1)(2)(4), 옥룡가(玉龍歌)(3), 옥산한광방(玉山韓光方)(3), 왕씨간이방(王氏簡易方)(3), 왕씨박제방(王氏博濟方)(3), 왕씨이간방(王氏易簡方)(2)(3), 왕씨제증(王氏濟衆)(3), 왕씨집험방(王氏集驗方)(2)(3), 왕악산서(王岳產書)(2)(3), 외과발휘(外科發揮)(1)(4), 외과정요(外科精要)(1)(2)(3), 외과정의(外科精義)(1)(2)(3), 외과집험방(外科集驗方)(2), 외대비요(外臺備要)(3)(4), 외대연년방(外臺延年方)(3), 요대부(姚大夫)(3), 요씨(姚氏)(3), 요씨방(姚氏方)(3), 요화중(姚和衆)(3), 용수보살(龍樹菩薩)(2), 용수보살안론(龍樹菩薩眼論)(2), 용어하도(龍魚河圖)(3), 운화현추(運化玄樞)(2), 원용습유(元戎拾遺)(2), 위생방(衛生方)(3), 위생보감(衛生寶鑑)(2)(3)(4), 위생속방(衛生續方)(3), 위생십전방(衛生十全方)(2)(3), 위생이간방(衛生易簡方)(2), 유문사친(儒門事親)(2)(4), 유씨(劉氏)(3), 유연자(劉涓子)(3), 유우식전신방(劉禹錫傳信方)(3), 은해정미보(銀海精微補)(1), 음증약례(陰證略例)(2), 의가대법(醫家大法)(4), 의가필용(醫家必用)(1), 의경소회집(醫經溯回集)(1), 의림방(醫林方)(2)(3), 의림유증집요(醫林類證集要)(1)(4), 의방고(醫方考)(1), 의방대성(醫方大成)(2)(3), 의방집략(醫方集略)(1)(4), 의방집성(醫方集成)(1)(2)(3), 의서대전(醫書大全)(1), 의설(醫說)(1)(4), 의안방(醫眼方)(1), 의첨원용(醫疊元戎)(2)(4), 의통(醫通)(4), 의학강목(醫學綱目)(4), 의학권여(醫學權興)(4), 의학입문(醫學入門)(1)(4), 의학정전(醫學正傳)(1)(4), 의학집성(醫學集成)(4), 이간방(易簡方)(2)(3), 이단속단방(理傷續斷方)(2), 이세적(李世勳)(3), 인제직지방론의맥진결(仁齊直指方論醫脈真訣)(1), 일화자(日華子)(3)(4), 자모비록(子母秘錄)(3), 자생경(資生經)(1)(3), 잡기구문(雜記九門)(2), 장문중(張文仲)(3), 장선생(張先生)(3), 장자화(張子和)(3), 장자화방(張子和方)(3), 장중경(張仲景)(3), 장중문전(張仲文傳)(3), 장씨육문방(張氏六門方)(3), 장중경오장론(張仲景五藏論)(1), 전상공(錢相公)(3), 전상공협중방(錢相公匯中方)(3), 전씨방(錢氏方)(3), 전씨소아방(錢氏小兒方)(3)(4), 전신방(錢信方)(3), 전영방(錢豐方)(3), 절제의론(節齊醫論)(1), 제생방(濟生方)(1)(2)(3), 제증입효방(濟衆立效方)(3), 조도방(助道方)(1)(2), 주씨집험방(朱氏集驗方)(2)(3), 주후방(肘後方)(1)(2)(3)(4),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重修改和經史證類備用本草)(1), 중광태평혜민화제

국방지남총론(增廣太平惠民和劑局方指南總論)(1)(2), 중급유방(拯急遺方)(1), 중주태평혜민화제국방(增注太平惠民和劑局方)(1)(2)(3), 중치료결(證治要訣)(4), 지교론(至教論)(4), 직언치료방(直言治療方)(3), 직지방(直指方)(1)(2)(3)(4), 진낭증약명시(陳郎中藥名詩)(1), 진맥수지(診脈須知)(1), 진맥요결(診脈要訣)(1), 진무택(陳無擇)(3), 진승조(秦承祖)(3), 진실증방(陳室中方)(3), 진씨소아두진방(陳氏小兒痘疹方)(2), 진장기(陳藏器)(3), 집성방(集成方)(3), 집험방(集驗方)(3)(4), 차사난지(此事難知)(1), 찬도방(纂圖方)(3), 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訣集成)(1), 창과정의(瘡科精義)(2)(3), 창과통현론(瘡科通玄論)(2), 창진방(瘡疹方)(2), 채약대(採藥對)(4), 채약별록(採藥別錄)(4), 천금방(千金方)(1)(2)(3)(4), 천금월령(千金月令)(2), 천금익방(千金翼方)(1)(2)(3), 천옥집(川玉集)(1)(2)(3), 천원옥책(天元玉冊)(4), 초우세(初虞世)(3), 최생신방(催生神方)(3), 최씨(崔氏)(3), 최씨방(崔氏方)(3), 최씨해상집(崔氏海上集)(3), 최원량방(崔元亮方)(3), 최원량해상방(崔元亮海上方)(3), 추노방(追癆方)(2), 추노선방(追癆仙方)(2), 치법잡론(治法雜論)(2), 치병백법(治病百法)(2), 침구집서(鍼灸集書)(1), 침경(鍼經)(4), 탕씨(湯氏)(3), 탕액본초(湯液本草)(1)(4), 태산구급방(胎產救急方)(2)(3), 태청제초목방(太清諸草木方)(3), 태평광기(太平廣記)(3),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1)(2)(3)(4), 통진자상한팔요(通真子傷寒括要)(2)(3), 통진자상한팔요시(通真子傷寒括要詩)(2), 포박자(抱朴子)(3), 필용전서(必用全書)(2), 필용지서(必用之書)(2), 필효방(必效方)(3), 하우신선경(夏禹神仙經)(3), 해상명방(海上名方)(3), 해상방(海上方)(3), 해상선방(海上仙方)(2), 현주밀어(玄珠密語)(4), 활유신서(活幼新書)(4), 활인심법(活人心法)(1), 활인총괄(活人總括)(3), 황제소문(黃帝素問)(1)(4), 황제팔십일난경(黃帝八十一難經)(1)(4)

위의 중국의서를 분석하면, 총 406권중 조선판 중국의서는 111종, 의방유취 인용서는 134종, 향약집성방은 225종, 동의보감은 78종이었다. 하지만 본고에서 제시한 우리 의학 역사상 수입된 중국의서 목록이 완전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의방유취와 향약집성방은 실제 중국의서를 인용한 연구자료를 근거한 것이지만, 동의보감의 경우 실제 인

용한 중국의서에 관한 2차 연구자료가 없어 간단하게 동의보감의 역대의방(歷代醫方)을 근거한 것과 같다. 또 각각의 우리 의서에서 동일한 중국의서를 인용하면서 표기를 중국의서명을 축약하거나 저자를 표기함으로써 혼잡한데 본고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2. 우리 의서의 보호 방안

우선은 현행 저작권법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우리 의서의 보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WIPO의 TK(전통지식), GR(유전자원) 등의 저작권적 보호 논의에 부합되는 우리 의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 현행 저작권법을 통한 우리 의서의 보호 가능성

현행 저작권은 자기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복제권, 상연권(上演權), 번역권 등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즉 저작재산권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으로 대별된다⁷⁾. 이러한 현행 저작권에서 중요한 것은 저작자와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기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요건 등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을 우리 의서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저작재산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같이 일정한 기간동안 존속하다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작권 자체가 소멸하고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 가능하다. 현행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이러한 보호기간으로 보면 대부분의 우리 전통 의서들의 보호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본고에서 제시한 우리 의서들은 대부분 1900년도 이전 것인데, 이는 대략 100년이 안된 의서의 경우 현재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후 50년간이므로 현행

7) 李漢相, 金俊學. 知識財產權. 초판 2쇄, 서울: 圖書出版 第一法規. 2001: 835.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WIPO의 TK, GR 및 FL의 지재권적 보호 방안 논의의 성격은 의서라는 창작된 출판물, 저작물 자체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그 나라에 전래되는 지식 즉 TK 등을 보호하자는 논의이다. 이는 현행 저작권에서 제시하는 일정기간의 보호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TK를 보유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 창작되었고, 또 그 TK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⁸⁾ TK를 수록한 저작물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WIPO 논의의 성격에 부합된다고 본다.

둘째,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존재하여 재산권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보호주체가 된다. 하지만 1900년도 이전의 우리 의서 대부분은 정부에서 주도한 저작물로서 저술에 참여한 대표적인 정부인물을 표시하였거나 저작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개인 저작물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개인 저작물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을 적용한다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TK는 그 성격상 개인의 독창적인 창작보다는 전래되는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1900년도 이전의 우리 의서에 대한 보호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셋째,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일반적으로 ①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② 창작성이 있을 것, ③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등 3가지라고 할 수 있다⁹⁾. 또는 우리나라에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국민에 의하여 창작된 것이어야 하고, 둘째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셋째로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보호하여야 할 외국인의 저작물이어야 한다¹⁰⁾고 한다. 이러한 저작물의 보호요건들에 대해 우리 전통의서는 어느정도 충족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WIPO의 논의는 저작물 자체에 대한 보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통의서에 담겨져 있는 아이디어나 지식에 관한 부분을 보호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저작권법으로 우리 전통의학의 저작물인 옛 의서를 보호하기 어려우며, WIPO 논의의 중요한 주제에 따라 우리 의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외 다른 측면에서 보면, PCT 국제기관회의(MIA) 7차 회의(2003. 2)에서 TK 관련 비특허문헌의 PCT 최소문헌화에 합의해서 제시한 기준을 보면 ① 선행기술일자 등 선행기술로서 요건을 갖춘 기술적 내용의 충분한 표현 ② 전자적 형태의 입수 가능성을 포함하는 자료에 대한 실질적 접근방법 ③ 영문 내용 또는 최소한 영문 초록의 입수 가능성 ④ 정기 간행물의 기술분야 및 자리적 범위 ⑤ 텍스트 검색 가능성 및 이용비용을 포함하는 사용조건 등이다. 이 기준은 우리 전통의서 전체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대 과학적 방법적 연구를 통해 일정한 형식인 논문으로 발표되고 영문화 혹은 디지털화된 TK 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WIPO 논의가 TK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TK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단순히 현행 지재권법을 TK 등에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00년도 이전에 공개된 의서에 대해서는 모두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우리 의서 보호상의 문제점

앞에서 1900년도 이전의 우리 의서 현황에 대해 없어진 의서는 29종, 일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12종, 현재 있는 의서는 136종이 있고 1900년도 이후에 출판된 의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에 아직 일반에게 미공개된 회귀본, 발간하지 못한 원고본, 당시 명의들의 임상기록, 비방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에서 수입된 중국의서를 분석하면, 총 406권이었는데, 이중 조선판 중국의서는 111종, 의방유취 인용서는 134종, 향약집성방은 225종, 동의보감은 78종이었다. 이러한 우리 의서의 현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8) 예를 들어 향약집성방의 경우 우리나라 과거 역사서인 이조실록(李朝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60에 세종15년(1433)癸丑5월 “鄉藥集成方成。命權采序之曰；自神黃而下……”와 같은 내용과 같은 방증자료이다.

9) 吳承鍾, 李海完 共著. 著作權法. 重版. 서울: 博英社, 2002: 19-20.

10) 李漢相, 金俊學. 위의 책, 838.

첫째, 지금까지 전래되어 공개된 우리 의서는 140종이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아직 일반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발굴된 우리 의서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WIPO 논의에서 선행과제로서 시급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TK와 관련된 자료 목록화 작업과 DB화이다. 이는 WIPO에서 TK 등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DB로 구축된 자료만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시급히 현재 발굴되지 않은 우리 전통의학의 의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파악해서 좀더 많은 TK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 의서가 140종에 불과한데 비해 중국에서 수입되어 우리 의서에 인용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중국의서는 모두 400종이 넘는다. 이는 우리 의서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중국과의 마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의서들의 형태를 보면, ① 의서 전체가 실전(失傳)되었지만 일본 혹은 중국 의서에 일부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 ② 편집 분류를 새롭게 하여 중국의서를 위주로 그대로 인용한 경우 ③ 동의보감과 같이 편집분류를 새롭게 하여 중국의서를 인용하였더라도 중국의서의 처방을 변화시켜 인용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 의서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의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예규 제233호(1969.6.7)의 제 4조를 통해 고시한 기성한약서(既成韓藥書) 11종이 있는데, 방약합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증신편, 약성가, 사상의학,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이 그것이다. 이중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은 중국에서 발간된 중국의학서이다. 이외 의약분야특허심사기준에 의하면 신농본초경, 황제내경, 상한론, 의심방(醫心方),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 중약대사전(中藥大辭典), 도해향약대사전(圖解鄉藥大辭典) 등과 같은 기존 한의서 및 한약관련 사전에 기재된 처방이나, 민간요법으로부터 유래된 처방을 모방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¹¹⁾고 한다. 이러한 기준들에는 우리 의서와 중국의서가 섞여 있는데, 중국의서들은 이러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아직 WIPO 논의에 관해 적극적인 중국측과 우리가 협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서를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한약 관련 연구자나 발명자들에게 유익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는 현행 특허법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기준으로 공개되어진 우리 의서상의 임상기술을 선행기술로 보고 이를 지재권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 즉 우리 의서상의 임상기술을 현재 사회에서 생산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유익한 이익을 준다면 굳이 이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특허법이 외에 예를 들어 전통임상기술 제품이라는 인증마크를 통해 우리 의서상의 전통임상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방안과 같은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의서라는 저작물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의서의 적극적인 보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단순히 우리 의서를 저작물로서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의서명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의서인 동의보감의 경우에는 회사명이나 제품명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의서명을 브랜드로 보호하고 또한 브랜드화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III. 고찰 및 결론

WIPO 정부간위원회의 6차례에 걸친 TK, GR 등의 지재권적 보호 논의에서 문헌화 지원과 DB 구축에서 '내용 및 출처확인 표준', '기술적 표준' 및 '보안관련 표준' 등을 통한 DB화된 자료를 선행 기술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11) 이상정·조상혁·안효질. 전통의약 분야의 법적·제도적 보장 방안 연구. 창작과 권리 2002년 여름호. 서울: 세창출판사, 2002: 81.에서 재인용

따라서 국내의 전통의약지식이 보호받기 위하여 국내 TK 관련 자료에 관한 DB 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선결 요건의 하나로 방대한 국내의 전통의약 관련 자료와 관련하여 일부 문헌을 기준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 의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서의 수입도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우리 의서를 보호하는데 현행 저작권법의 적용가능성과 이외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1900년도 이전의 우리 의서 현황에 대해 없어진 의서는 29종, 일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12종, 현재 있는 의서는 136종이 있고 1900년도 이후에 출판된 의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외에 아직 일반에게 미공개된 회귀본, 발간하지 못한 원고본, 당시 명의들의 임상기록, 비방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에서 수입된 중국의서를 분석하면, 총 406권이었는데, 이중 조선 판 중국의서는 111종, 의방유취 인용서는 134종, 향약집성방은 225종, 동의보감은 78종이었다.

이러한 우리 의서를 현행 저작권법의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호기간, 보호주체(저작자), 보호 내용에 대해 WIPO 논의의 성격과 부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을 근거로 현행 저작권법에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100년 정도로 보고 1900년도 이전에 발간된 의서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보호 내용에 있어서 현행 저작권법은 어떤 창작성적인 표현을 주로 보호하는데 반해 WIPO 논의는 아이디어나 기술 내용을 보호하는 것으로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행정적 보호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와 현행 특히 심사를 위한 PCT 문헌 기준은 WIPO 논의의 성격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러한 PCT 최소문헌화 기준은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현행 저작권법 이외에 우리 의서를 보호하는데는 일반에게 공개된 우리 의서의 양이 중국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또한 현재 본원에 있는 고의서의 양을 볼 때 보호받아야 할 우리 의서를 새롭게 발굴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 의서의 저작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중국의서의 내용을 일부 인용해 분류를 새롭게 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다른 문제는 복지부의 기성한약서와 의약분야특서 심사기준에 중국의서가 섞여 있는데 이를 제외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개된 의서의 내용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서의 임상기술 내용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실제적으로 WIPO의 논의에 부합되는 우리 의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WIPO의 TK, GR 및 FL의 지재권적 보호 논의의 의의에 맞도록 우리 의서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의학의 TK, GR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參 考 文 獻

- 崔秀漢 編著. 朝鮮醫籍通考. 1版1刷,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金信根 編著. 韓醫藥書叢, 초판 3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1卷), 서울: 驛江出版社, 1994.
- 도서정보 2003. 한국한의학연구원. 2003: 117-119.
- 金斗鍾. 韓國醫學史, 재판, 서울: 探求堂, 1978.
- 김남일. 鄉藥集成方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제26회 한국고전연구 심호지음, 鄉藥集成方의 종합적 검토. 震檀學會, 1998.
- 최환수, 신순식. 醫方類聚의 引用書에 관한 연구(1).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997: 3(1): 17-40.
- 李漢相, 金俊學. 知識財產權. 초판 2쇄, 서울: 圖書出版 第一法規, 2001.
- 吳承鍾, 李海完 共著. 著作權法. 重版, 서울: 博英社, 2002.
- 이상정·조상혁·안효질. 전통의약 분야의 법적·제도적 보장 방안 연구. 창작과 권리 2002년 여름호. 서울: 세창출판사, 2002: 65-120.